

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(김미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75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30.

발 의 자 : 김미애 · 안상훈 · 김대식
김예지 · 김민전 · 김성원
이종욱 · 최보운 · 윤영석
조경태 · 김재섭 · 박준태
조정훈 · 엄태영 · 박수영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령은 입양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특별위원회로 입양정책위원회를 두고, 효율적인 심의·의결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입양정책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위원 정원이 각각 50명, 10명 이내로 제한되어 위원회 상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등 심의·의결 사항의 처리 역량에 한계가 뚜렷하고,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아동의 결연 등 입양에 필요한 행정절차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아동권의 보호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상당함.

이에 입양정책위원회와 그 분과위원회인 국내입양분과위원회의 위원 정원을 상향하는 등 안건을 신속하게 심의·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입양제도로 개선하고, 아동의 조

속한 가정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12조 및 제12조의2 신설).

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3항 본문 중 “위원장을 포함한 50명”을 “위원장을 포함하여 지역별 안배를 고려한 200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8항 중 “제1항부터 제7항까지”를 “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”으로, “위원회 및 분과위원회”를 “위원회”로 한다.

제2장에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2(분과위원회) ① 제12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·의결하기 위한 분과위원회로서 위원회에 국내입양분과위원회 및 국제입양분과위원회를 각각 둔다.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한 사항은 위원회가 심의·의결한 것으로 본다.

② 국내입양분과위원회 및 국제입양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각각 100명,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역별 안배 및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한다. 다만,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- ③ 분과위원회는 심의·의결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기관·단체 및 전문가에게 자료·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) 제12조 및 제12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
정한다.

<신 설>

제12조의2(분과위원회) ① 제12조
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을
효율적으로 심의·의결하기 위
한 분과위원회로서 위원회에
국내입양분과위원회 및 국제입
양분과위원회를 각각 둔다. 이
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·의
결한 사항은 위원회가 심의·
의결한 것으로 본다.

② 국내입양분과위원회 및 국
제입양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
명을 포함한 각각 100명, 10명
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분
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
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
의 위원장이 지역별 안배 및
성별을 고려하여 지명한다. 다
만,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
위원회의 위원장과 분과위원회
의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
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
하며,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
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
의결한다.

③ 분과위원회는 심의·의결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기관·단체 및 전문가에게 자료·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